[재공고] 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진입형) 공고(1개 과제)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진입형)

ㅇ 사업목적 : AI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장르별 초기시장 진입 및 도약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6. 6. 1 ~ 2026. 11. 30.까지 (6개월) *예정

지원내용

사업 내용

ㅇ **(지원내용)** 범장르 기반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및 초기 시장 진입 연계 지원

※ 선정된 기업 중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

1. 콘텐츠 제작

① **장르 융합:** 기존 문화 콘텐츠 장르+인공지능 기술 (1개 과제 내외)

구분		내용
기반	인공지능 기술	·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고도화한 인공지능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 · 콘텐츠 제작 공정의 자동화·효율화를 위한 AI 활용 등 * 범용 AI 서비스의 단순 활용 및 일부 사용은 지양
결과물	문화콘텐츠 장르	· **방송·영상, 캐릭터, 웹툰, 음악 등 기존 문화 장르 콘텐츠 결과물** -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게임·애니메이션·영화 분야 제외** · 본 과제 지원을 통해 최초로 제작·공개되는 독립적인 신규 콘텐츠

ㅇ **(지원규모) 과제별 국고 2억원 이내 x 1개 과제 (자부담률 10% 이상)**

※ 지원 과제 수는 과제 수 및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 구성 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컨소시엄 내 자율 편성

<자부담금 안내> 자부담금(자기부담금)은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현금)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률	**총사업비의 10% 이상**	
최대지원금(2억) 기준 자부담금 예시	국고지원금(A)	200,000,000원
	자부담금(B)*	**23,000,000원(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A+B)	223,000,000원 이상

* 자부담금은 백만원 단위로 올림, 자부담금 산정방법은 [1-3. 사업신청개요] 엑셀파일을 활용

*** 자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은 불인정**

지원 조건

① **(지원대상)** 수행기관은 **법인사업자**만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능)

구분	가능 형태	비고
주관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 **협약체결 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불가능 시 선정 제외**
참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단, **국고지원금은 중소기업만 편성 가능** 그 외 자기부담금은 전원 편성 가능	

② **(지원조건)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 및 공개가 가능한 기업**

	③ **(수행체계)**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지식재산권(IP) 및 사용권, 최종 결과물은 컨소시엄(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직접 기획하고 보유하여야 함 - 외부 기업·기관이 발주한 용역 과업을 수주하여, 해당 용역 과제를 본 사업의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함 - 타 기관 협업 시,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거나, 협업 범위, 협업 기간, 역할 및 협업 조건 등이 명시된 기관 직인이 날인된 공식 문서를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함
	④ **(신청 및 선정 조건)** 1개 기업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유형(선도형, 진입형, 협력형) 중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원 불가 ※ 예시) 선도형 최종 선정된 기업이 상이한 과제로 신청 불가
협약 조건	**※ 협약조건 미달성 시, 결과평가에서 '탈락'으로 평가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을 완료해야 함 - 단, '콘텐츠 플랫폼/설루션 실증 제작 분야'의 경우 플랫폼/설루션 실증 포함 ② 협약기간 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투자자 대상 발표, 투자 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 연계 활동을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수행해야 함 ③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과업을 전부 위탁하여 수행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인공지능 기술 관련 핵심 과업의 일부는 반드시 컨소시엄(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함 ④「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및「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사전 고지, 표시 등에 대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사항 (권고) : · 본 사업은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2026년 AI 콘텐츠 페스티벌 및 소통협의체, 성과보고회 등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야 함
사업비 활용 범위	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관련 제반 비용 (제작 · 홍보 · 시장 검증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 일반용역비는 총사업비의 30% 이하만 편성 가능
	② 콘텐츠 제작인력 · 기술개발 인력 인건비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대표자는 국고지원금 편성 불가능
	③ 인공지능 모델 학습·추론을 위한 클라우드 사용료(공공요금및제세), 외부 플랫폼 구독료(일반수용비)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6. 4. 29. (수) ~ 2026. 5. 8. (금)

ㅇ 접수기간 : 2026. 4. 29. (수) ~ 2026. 5. 8. (금)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기한 임박 시, 사이트 과부하 및 파일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제출 오류가 빈번합니다. 추가 접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관은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0-9595)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개요
-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 참여인력 이력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평가 시 '지역기업' 배점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 기타 증빙자료(주관기관)

☞ **제출서류 폴더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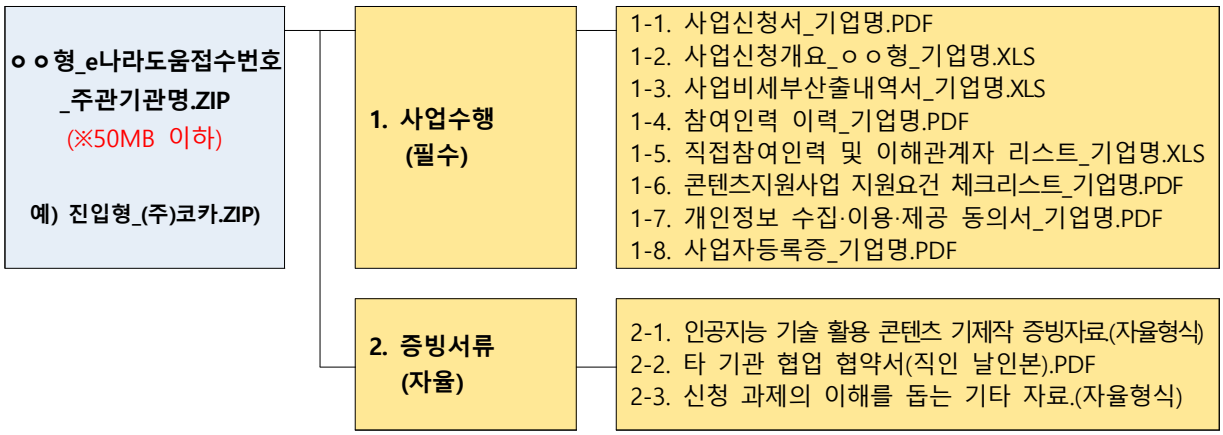

※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제출서류가(알집) 50MB 초과하는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용량 초과, 파일 오류 및 열람 불가능, 업로드 실패 등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신청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단계	평가방법	내용	선정 과제수
1단계	서면평가	-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최종선정 과제의 5배수 이내
2단계	발표평가	- 콘텐츠 구성 및 세부사업계획 발표	최종선정: **서면(40%)+발표(60%)**

* 평가 단계별 기준 점수 및 선정 과제 수는 지원금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서면**) 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관련 서면평가 진행,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5배수 내외)를 2단계(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발표**) 평가 : 1단계 통과 후 2단계 평가에 참여한 과제 중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통과
- 최종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최종선정 과제 협약 취소 등 대비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 가능
- 사업비 조정 심의(종합심의)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지원금액 확정

- 1단계(서면)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10)	기관 전문성	인공지능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경험 역량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5
	관리 체계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우수성	사업수행계획서(수행관리체계)	5
참여인력 (5)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의 구성 및 배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총괄표), 참여인력이력	5
과제 기획력 (45)	AI기술 융합성	인공지능(AI) 기술 실효성, 콘텐츠 융합기술 고도화 수준	사업수행계획서	20
	사업 이해도	인공지능(AI) 콘텐츠 진입형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수행계획서	15
	경쟁력	비교 우위 요소(IP, 기술, 파트너십 등)보유 및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기대성과 (30)	시장성	예상 수요 및 매출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서	15
	투자유치 가능성	기대 투자유치 목표 및 준비, IR 피칭 계획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서	15
사업비 (10)	사업비 규모	사업비(국고, 자부담)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5
	사업비 조달계획	자부담 조달계획의 구체성·현실성	사업수행계획서(사업비조달계획)	5
합계				**100**

- 2단계(발표)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15)	기관 전문성	인공지능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경험 역량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5
	관리 체계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우수성	사업수행계획서(수행관리체계)	5
	추진 의지	과제책임자의 수행 의지 및 충실도	발표 내용	5
과제 기획력 (50)	AI기술 융합성	인공지능(AI) 기술 실효성, 콘텐츠 융합기술 고도화 수준	사업수행계획서	20
	사업 이해도	인공지능(AI) 콘텐츠 진입형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수행계획서	15
	경쟁력	비교 우위 요소(IP, 기술, 파트너십 등) 보유 및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5
기대성과 (33)	시장성	예상 수요 및 매출 규모 가능성 및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서	13
	투자유치 가능성	기대 투자유치 목표 및 준비, IR 피칭 계획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서	10
	품질 경쟁력	인공지능(AI) 콘텐츠 품질 경쟁력 수준	사업수행계획서	10
ESG (2)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여부: 1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제출 1점, 미제출 혹은 제출 내용 미흡 0점	사업수행계획서	1
	지역균형	지역기업 참여 여부(주관기관 본사 기준) : 1점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1점	사업자등록증	1
합계				**100**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호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 참여기관의 경우 가능합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AI융복합콘텐츠팀

- 진입형 (☎061-900-6356, ☎061-900-6357)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안내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5조 및 제15조의2,「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 제42조)

ㅇ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증빙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협약기간 혹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성과관리 및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 시 실적 증빙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50조)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